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임기성 과장, 권기성 사무관(2110-5427)

지경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5.2(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동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 할당·거래 등 주요사항의 심의·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 (적용대상)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적용 가능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업종별 적용여건과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배출권거래제 의무참여 업체기준 : 연평균 12만5천tCO_2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천tCO_2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 (배출권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 방법으로 거래 가능하며,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의 안정적 거래 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치

○ (무상할당비율) 1차('15~'17)·2차('18~'20) 계획기간은 95% 이상으로 하고, 업종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 (배출량 보고·검증·인증)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실제 배출량을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평가·인증

○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평균가 3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동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으로,

○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효과적이고 親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예시) :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기준·방법, 무상할당비율, 탄소누출업종(100% 무상할당) 선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외부감축실적(off-set) 인정 등

붙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참 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할당 대상업체 (12만5천tCO_2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천tCO_2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최초 지정된 목표관리업체)) + 자발적 참여업체)
계획기간	5년 단위 (1차(15~17)·2차(18~20)는 3년씩)
배출권 할당	할당계획에 따라 별도로 할당 ☞ CO_2 배출총량(절대량) 제한방식 할당 ☞ 유/무상할당 (1·2차는 무상 95% 이상 할당, 유상할당 단계적 확대)
탄소누출 업종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 민감업종에 대해 100% 무상할당 ☞ 국제경쟁력 저하, 탄소누출(Carbon Leakage) 우려 등
MRV (보고·검증·인증)	①보고 : 온실가스 實배출량 보고 ②검·인증 : 배출실적을 검·인증 ⇨ 實배출량 대비 보유 배출권 부족時 과징금 부과
이월· 차입	배출권의 이월(banking)·차입(borrowing) 허용 ☞ 이월(계획기간內 및 기간間), 차입(계획기간內)
조기 감축실적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 ☞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을 할당 받기 전 감축실적 대상
외부사업 감축실적 (off-set)	할당대상업체가 취득·보유한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상쇄) 가능 ☞ 국내외 보고·검증·인증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과징금	톤당 1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제3자 거래 참여	초기 6년에 한하여 제3자의 거래참여를 제한 (6년이후는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은 거래 당사자로 참여 가능)
시행시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